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94호 2023. 8. 28.(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3-1378호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고성군 공고 제2023-1355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3-1378호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8.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사무 정비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군민 편의를 제고하고, 「경관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안 제30조)

1) 공청회 관련 법령 조문 변경

2) 「경상남도 경관 조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사무 정비(안 제18조, 별지 제5호 서식)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인감증명서 제출 서류 목록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2) 전화: (055)670-2565, 팩스: (055) 670-25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전화: (055)670-256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 을 “법 제11조제2항”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상남도 경관 조례」” 를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제13조” 로, “도시디자인위원회” 를 “경관위원회” 로 한다.

- 1.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청회) ① 군수는 <u>영 제5조제2항</u>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0조(공청회) ① ----- <u>법 제11조제2항</u>-----</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생략)</p> <p>②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생략)</p> <p>2. <u>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인감증명서</u></p> <p>3. (생략)</p>	<p>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제30조(심의·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1. 「<u>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u>」에 따른 <u>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u></p>	<p>제30조(심의·자문 의제) -----</p> <p>-----</p> <p>-----.</p> <p>1. 「<u>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4조에 따른 <u>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u></p>

2. (생 략)

3. 「경상남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
원회의 심의·자문사항

4. ~ 6.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제1
3조----- 경관위원회----

4. ~ 6.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3-1379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을 일괄개정하는데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8.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의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 (055)670-2083, FAX: (055)670-20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전화: 055-670-20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401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4조의2(존속기한) ----- ----- ----- <u>2028년 12월 31일</u> ----- -----.

제2조(「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 <u>2028년 12월 31일</u> -----.

제3조(「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4조의2(존속기한) ----- ----- ----- <u>2028년 12월 31일</u> ----- -----.

제4조(「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u>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 <u>2028년 1</u>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월 31일-----.

제5조(「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2조의2(존속기한) ----- ----- ----- <u>2028년 12월 31일</u> -----.

제6조(「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 <u>2028년 12월 31일</u> -----.

제7조(「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 <u>2028년 12월 31일</u> -----.

제8조(「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고성군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p> <p><u>제3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p>	<p>고성군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p> <p><u>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